

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서구의회의원 재선거(바선거구)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

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서구의회의원(바선거구) 재선거일입니다.

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(위장전입)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「공직선거법」 제247조(사위등재·허위날인죄)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■ 기 간 : 2019. 9. 26. ~ 2020. 3. 28.(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)까지

■ 위장전입 사례

-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주택·나대지 등에 전입신고
-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
-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
-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
- 친인척의 집, 동료의 자취방·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입신고



서구선거관리위원회